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동의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구단체의 목적 및 정의(안 제1, 2조)
-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안 제3, 4조)
-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5, 6조)
-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 지원(안 제9조)
- 연구용역비 신청(안 제10조)
- 연구단체 등록 취소(안 제13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비용추계 : 붙임
- 관련부서 협의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해당없음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란 충청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연구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 1명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수는 2개 이하로 한다.

제4조(등록)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① 연구단체의 등록과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등록 및 취소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3. 연구용역의 승인
4.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개최 시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의원을 참석하게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본인의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용역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5호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대표자에게 통지한다.

제8조(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승인 기간으로 한다.

제9조(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도액을 정하여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 수행에 따른 수용비, 급식비, 현장활동 여비 등
2. 연구활동에 따른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수당
3. 연구활동과 관련된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에 따른 경비

③ 의장은 연구단체 구성 및 주제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는 연구단체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결 후 사항발생시마다 청구금액을 지급한다.

④ 연구단체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용역비 신청) ① 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제신청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용역 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용역 전문기관 사전검토) 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하여 충북연구원 등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용역 추진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용역 성과물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로 별지 제8호 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용역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용역 종료 후 30일 이내로 성과물(책자,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구활동 목적 이외의 연구활동을 한 경우
2. 연구활동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3. 연구활동이 부진하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자 합니다.

1. 단 체 명 :
2. 연구 과제명 :
3. 구 성 의 원 :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서 명(날 인)	비 고

첨부 : 연구활동계획서 부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충청북도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연구 활동 계획서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연구활동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자	의원(인)	
연구책임자	의원(인)	
연구내용	주제	
	목적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별첨” 구체적으로 기술>	
연구 활동비	총액	원
	산출내역	<“별첨” 구체적으로 기술>
기타		

충청북도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연구용역 과제신청서

용역명			
용역기간	부터 까지	용역비 소요액	천원
연구목적			
용역내용			
용역결과 활용계획			
기대효과			

위와 같이 연구용역 과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연구용역 사업계획서 부

신청인(대표자)

(인)

충청북도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연구용역 사업계획서

연구과제명 :

연구개요

- 연구목적
- 연구내용

용역기간 :

과업지시서

-
-

소요사업비

- 예정금액
- 산출기초

※ 3종작성 (원가계산서, 설계예산서, 산출기초 : 학술연구용역비 기준 단가 적용)

최근 5년간 유사연구사례

-
-

활용계획

-

[별지 제5호 서식]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서

년 월 일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귀 단체의 년도 연구활동계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하
였음을 통지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자	
연구과제명	
심의·의결내용	

충청북도의회의장

[별지 제6호 서식]

연구용역 심의결과통지서

년 월 일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귀 단체의 년도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자	
연구과제명	
심의·의결내용	

충청북도의회의장

[별지 제7호 서식]

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

년 월 일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단체명		
제출자	의원(인)	
변경내용	당초	
	변경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기술>	
기타		

신청자(대표자) (인)

충청북도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요약)

구분	주요내용
연구단체명	
연구과제명	
연구결과 요약	
기타사항	

붙임 : 연구활동결과보고서 15부.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자(대표)

(인)

충청북도의회의장 귀하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의회조례)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의회 의원이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동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조직하여 연구할 수 있는 제반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안 제9조 연구단체 지원에 따른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

3. 관련조문

- 안 제9조(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 지원) 제1항
 -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도액을 정하여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 가. 재정수반요인 : 연구단체에 대한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 지원
- 나. 추계의 전제
 - 연구활동비 :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급
 - 연구용역비 :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급
- 다. 추 계 결 과 : '20년부터 향후 5년간 연구활동비 140,000천원, 연구용역비 752,000천원 등 총 892,000천원 정도 소요 예상
- 라.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세 출	892,000	140,000	188,000	188,000	188,000	188,000
연구활동비	140,000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연구용역비	752,000	112,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